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제 대 군 인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·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, 감면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표기(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, 제2항을 개정하여 보훈병원 감면비율 등 명시)

나.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신설

(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병원에서 50% 감면비율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)

다. 감면대상 질병 범위 지정

(현행 제3항을 제5항에 기입하고 별표1의 제목중 관련법 조항 변경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29. ~ 6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심사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)”을 “(보훈병원 등 진료비의 감면비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”를 “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
별표 1의 제목 중 “(제23조제3항 관련)”을 “(제23조제5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)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.	제23조(보훈병원 등 진료비의 감면비율) ①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----- ----- -----.
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의2를 준용한다.	②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 ----- ----- ----- ----- --.
<신 설>	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<신 설>	④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

③ (생략)	<u>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</u>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713